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범방해죄 및 거짓진술죄 신설 등 〉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80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4. 11. 14.
3. 회 부 일: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범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범방해죄로 처벌함(안 제139조의2 신설).

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선서를 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예외로 인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신설, 안 제152조제2항 개정).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9조의2(사법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또한, 개정안은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거짓 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거짓 진술은 가중처벌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거짓 진술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2조, 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하고 있는바, 이른바 넓은 의미의 사범방해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52條(偽證, 謀害偽證) <신설>	第152條(偽證, 謀害偽證) ①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偽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③ -----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
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신 설>

第153條(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
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
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

제152조의2(거짓 진술)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
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
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인 것을 알
면서도 진술하거나 거짓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第153條(自白, 自首) 제152조 및
제152조의2의 죄---진술한----

<u><신 설></u>	<u>제155조의2(증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적정성”과 실체를 확인해 나가는 “절차의 적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함. 이 중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방해 행위인바, 이러한 사법방해 행위는 수사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나, 공판절차·형집행절차 등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참고인 등이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 등도 증가하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는 것인바, 이는 범죄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수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사법방해죄 유래 및 외국입법례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임. 이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규제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¹⁾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구체적인 죄명이 아니라 사법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군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미국 연방법은 제73장에서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라는 제목 하에 제1501조에서부터 제1521조에 걸쳐 사법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Chapter 73. Obstruction of Justice>²⁾

1) 박광섭,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180

2) 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Crimes/ Chapter 73. Obstruction of Justice.

§ 1501. Assault on process server
 § 1502. Resistance to extradition agent
 § 1503. Influencing or injuring officer or juror generally
 § 1504. Influencing juror by writing
 § 1505. Obstruction of proceedings before departments, agencies, and committees
 § 1506. Theft or alteration of record or process; false bail
 § 1507. Picketing or parading
 § 1508. Recording, listening to, or observing proceedings of grand or petit juries while deliberating or voting
 § 1509. Obstruction of court orders
 § 1510. Obstruc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 1511. Obstruction of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nt
 § 1513. Retaliating against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nt
 § 1514. Civil action to restrain harassment of a victim or witness
 § 1514a. Civil action to protect against retaliation in fraud cases
 § 1515. Definitions for certain provisions; general provision
 § 1516. Obstruction of Federal audit
 § 1517. Obstructing examin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 1518. Obstruc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of health care offenses
 § 1519. Destruction, alteration, or falsification of records in Federal investigations and bankruptcy
 § 1520. Destruction of corporate audit records
 § 1521. Retaliating against a Federal judge or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by false claim or slander of title

제73장 이외에도 연방법 제1001조(허위진술죄) 등 다른 장에서 개별적으로 사범방해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범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등 사범방해죄를 도입하고 있음.

사범방해죄에 대한 포괄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등에 국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사범방해죄 도입에 관한 외국 입법례⁴⁾>

3) 김종구, “미국 연방법상 사범방해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4집(2009년), 320면, 박광섭, 앞의 논문, 185면.

4) 최명수, “허위진술죄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5~41면.

- **미국:** 사범방해죄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참고인의 허위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순 부인진술까지 처벌
- **이탈리아:** 허위진술 등에 의한 사범방해죄를 폭넓게 인정하여 검사에 대한 참고인의 허위진술 및 진술거부도 처벌
- **독일:** 일반적인 허위진술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고죄와 범죄가장죄를 적용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형벌방해죄로 처벌
- **오스트리아:** “선서 있는 허위진술죄”,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 대한 허위진술죄”,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등 선서의 유무나 대상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위증죄로 처벌
- **프랑스:** 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
- **일본:** 증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회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대화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하면서 검사 또는 수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위조·변조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

2) 현행 관련 규정과 사범방해죄 도입 찬반론 및 종전 개정안 논의 경과

우리 「형법」은 사범방해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사범방해로 볼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⁵⁾ 법정모욕죄(제138조),⁶⁾ 범인은닉죄(제151조),⁷⁾ 위증죄(제152조),⁸⁾ 증거인멸·증인은닉죄(제155

5)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의원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원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⁹⁾ 무고죄(제156조)¹⁰⁾가 있고, 개별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범죄(제5조의9),¹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¹²⁾의 허위진술 참고인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이 있음.

학계는 외국입법례와 같은 취지의 사법방해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¹³⁾

찬성론은 ① 참고인이나 증인 등 제3자의 허위 진술 등을 방지함으로써 실제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증인의 법정출석이나 진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회유 등을 하여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

② (생략)

8)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생략)

1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이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13) 박광섭, 앞의 논문, 200~209면.

므로 그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②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행위 등을 처벌하게 되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수사를 줄일 수 있어 피의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고,¹⁴⁾ ③ 적절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범죄자가 처벌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며, ④ 국민은 수사절차에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진술로 사법절차를 방해할 권리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사법협조의무는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임.

반대론은 ① 만약 참고인 진술이 수사기관과 공판정에서 다름을 이유로 허위진술죄로 처벌한다면 참고인이었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려워져 공판중심주의가 훼손 또는 형해화될 수 있고, ②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제재를 가하여 진실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며, ③ 선서를 하지 않는 참고인을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는 것은 선서를 요건으로 하는 위증죄의 증인과 형평성에 어긋나고,¹⁵⁾ ④ 참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죄 처벌은 인간의 본성상 자기보호 본능에 따른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사법방해죄 도입 관련 그간의 개정논의로는 제18대 국회는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629호),¹⁶⁾¹⁷⁾ 제20대 국회

14)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방안” 「법조」, 2001. 6, 154면 참조.

15) 박달현, “사법방해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32면.

는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632호)¹⁸⁾이 있었음.

참고로, 현재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59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4.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812629호)

제152조(위증) ①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의2(허위의 진술)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하여 줄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증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위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에 의한 위증죄로 처벌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신설하며, 증인 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죄 등을 신설하는 것임. 그러나, 당시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법학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조상운, “사법방해죄의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9. 4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8)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위 찬성론의 논거 외에도 다음의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사범방해죄 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고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음. 현행법상 무고죄·범인은닉죄·증인도피죄·위증죄·증거인멸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거짓 진술, 거짓 증거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진술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증거인멸죄나 범인은닉·증인도피죄 등의 경우 본범 자신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¹⁹⁾ 타인을 교사한 경우만 교사죄로 처벌됨.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거짓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범인은닉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음.²⁰⁾

둘째, 현행법상 행정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²¹⁾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생략)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0)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판결]에서 단순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에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7. 9.9. 선고 97도 1596판결]에서도 참고인이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경우에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21) 「건축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행정절차보다 더 중한 형사절차에서 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제기될 수 있음.

셋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서는 증인 회유·협박에 의한 사법방해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25조(사법방해)²²⁾>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의 허위 증언·감정을 유도하거나, 증언·감정 또는 증거의 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법관 또는 법집행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 이 호의 규정은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법을 행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icle 25. Obstruction of justice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a) The use of physical force, threats or intimidation or the promise, offering or giving of an undue advantage to induce false testimony or to interfere in the giving of testimony or the production of evidence in a proceeding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b) The use of physical force, threats or intimidation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official duties by a justice or law enforcement official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subparagraph shall prejudice the right of States Parties to have legislation that protects other categories of public official.

16조)은 국제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한 자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자 등을 사범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²³⁾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선진 형사사법절차의 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39조의2 및 제152조의2제1항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사범방해 행위의 상당 부분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유사하게 구성요건을 타인의 형사사건 등으로 한정하는 범죄들²⁴⁾이 있으나, 개정안에서 처벌하려는 행위는 수사 또는

2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사범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 ⑥ (생략)

24)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도피죄의 문인상 범인이 자기를 은닉하거나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주석형법 제5판(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41 및 51면(한경환)].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안 제139조의2제1호)와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 또는 법관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같은 조 제2호·제3호) 및 수사기관에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인 점을 알면서도 진술 등을 하는 행위(안 제152조의2제1항)이기만 하면 처벌하려는 취지로 보임.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되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 등의 행위를 형사절차 상 방어권 행사로 보지 않으려는 관련 규정들[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²⁵⁾ 타인의 형사사건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방해” 및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안 제139조의2제2호)라는 구성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실제 법 집행에 있어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④ (생략)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에서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에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형법」 제152조)가 성립된다(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를 전제).

안 제139조의2제2호는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방해” 및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경우인지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역시 그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행위 주체인 “증인”(안 제152조제1항)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제 법 집행에 있어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안 제152조제1항은 행위 주체를 “증인”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2항(현행 제152조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과 비교하여 증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바,²⁶⁾ 이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모해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선서한 증인이 모해 목적으로 위증한 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안 제152조제3항)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여러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려고 할 경우 각

26) 독일 형법에서는 선서없는 거짓진술죄의 행위 주체를 ① 법원에 대해 또는 ② 선서에 의한 증언이나 감성을 행하게 할 관청에 대해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선서 없이 거짓 진술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153조(선서 없는 허위진술) 법원에 대하여 또는 선서에 의한 증언이나 감성을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다른 관청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선서 없이 허위로 진술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범죄행위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평에 반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는데, 선서 없는 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²⁷⁾에서 선서 여부 및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와 관련하여 모해 목적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같은 법정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증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안 제155조의2)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받거나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진술하게 할 상대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²⁸⁾ 이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155조의2는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폭행·협박이나 금품 등 공여의 상대방이 참고인 또는 증인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한바, 보다 명확하게 행위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리하면, 사범방해죄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실체진실의 효율적 발견 및 허위진술에 따른 처벌의 공백방지, 피의자 및 피해자 보호

2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함.

28) 일본 형법은 ‘증인 등 협박죄’의 객체를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또는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05조의2(증인 등 협박)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면회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고, 국제사회 형사사법절차 및 행정조사절차와의 균형 유지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 붕괴 우려, 수사의 편의성 추구 경향 조장, 선서를 요하는 증인과의 형평성,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상충 등 부정적 측면에도 충분히 유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외국 입법례, 우리 형사사법제도와의 조화 등과 함께,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6